

칼럼

장기채 주필



제헌절은 과연 잊혀지는 국경일인가

옛그제 7월17일은 69주년을 맞은 제헌절이다. 그런데도 달력의 7월17일은 빨간 글씨가 아니다. 분명 국경일인데도 쉬지 않는다.

지팡스러운 우리나라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선언한 날인데도 말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다.

이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축하하고 이를 수호하며 준법정신을 높일 목적으로 제정된 국경일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국경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비구를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겠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 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언약이 루니 옛 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역민년의 터 정인보 선생이 제헌절을 기념

해 만든 노랫말이다.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는 구절은 헌법 제정을 문화적으로 절묘하게 표현해 감탄을 자아낸다.

옛그제 17일이 바로 그런 제헌절이다.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으니까 벌써 10년째이던가. 어쨌든 건국 70주년을 표방하는 나라의 달력에서 제헌절이 달력의 숫자 색깔만큼이나 퇴색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제헌절은 사실상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한 단계 낮은 국경일이 된 것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이 이 나라가 여전히 표현하고 있는 근원적인 이유와 맥이 닿아 있다는 생각도 지을 수 없다.

물론 주 5일제로 인한 공휴일과 휴일증가로 쉬는 날이 많아진 것 또한 사실이다.

그래서 제헌절이 쉬는 날에서 안 쉬는 날로 바뀌었다면 이 또한 더욱 실망스럽다.

결국 대한민국 건국 70주년을 보내면서 대한민국 탄생의 기초가 되는 헌법제정일, 다시 말하면 제헌절은 찬밥 신세가 되고 있다.

어쨌든 국경일인 것과 법정공휴일인 것 차이는 엄연히 국민이 느끼는 정서적 온도 차가 크다. 한마디로 체감이 크게 다를 것이다. 왜 국경일을 만들고 또 다시 법정공휴일을 지정하는가.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그날을 각인시키는 효과가 단지 국경일인 때와 그것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을 때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다.

아마도 이렇게 몇 해가 흘러가면 제헌절은 국민들의 뇌리에서 퇴색해 버리고 말 것 아니겠는가. 나라의 초석인 헌법이 탄생한 날이 법정공휴일이 아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최소한 일 년에 하루라도 오늘이 헌법의 탄생일이고, 이날이 있었기에 우리나라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려면 제헌절은 법정공휴일로 환원되어야 마땅하다.

다. 기쁨이나 나라꽃이 어수선하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라의 기본은 두말할 필요 없이 헌법에서 나온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70여 년 전 역사는 그 헌법의 수난사에 다름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탄생한 순간까지 우리의 생활과 기억에서 거세될 지경에 이르렀다.

제헌절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은 이제 단 한사람도 생존해 있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헌법은 살아있다. 지금부터라도 헌법을 탄생시킨 제헌절은 우리의 근간을 다시 생각하는 날로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근무시간 1위인 나라라고 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OECD국가 중 휴가기간 제일 짧은 나라 2위다. 이게 흑사라도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뺀 이유라면 참으로 넌센스다.

제헌절을 국경일이자 법정공휴일로 명실상부하게 되찾는 것은 우리의 근간을 다시 생각하는 그 첫걸음이자 첫 단추가 될 것이다.

그것은 수천 년간 이어져온 왕조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주권주의에 입각한 민주공화국을 여는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7월17일은 제헌절(制憲節),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비록 70주년을 맞는 올해도 공휴일은 아니었지만 우리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성찰해야 할 때다.

社說

휴가철 유기견 양산 막아야

7월 무더위와 함께 여름 휴가철이 찾아오면서 주인과 '생이별'을 하는 반려동물이 급증하고 있다. 집 비우는 기간에 비출 사람을 구했거나, 아예 비행기를 함께 타는 '행운'을 누리지 못해 버려지는 견공들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실시간 유기동물 통계 앱·사이트 포인핸드(Paw in Hand)에 따르면 이달 3~10일 전국 각지의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은 3천336마리로 나타났다.

원래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 동물은 332마리, 보호소에서 자연사한 동물은 301마리, 입양으로 새 주인을 만난 동물은 29마리, 안락사한 동물은 21마리로 각각 집계됐다.

전국 보호소에서 보호 중인 동물 수는 지난달 13~23일 1천669마리에서 지난달 23일에서 이달 3일까지 2천480마리로 늘더니 20일 만에 2배로 '경중' 된 것이다.

주인에게 버림받은 동물이 발견 후 동물 보호소로 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만큼 유기동물의 수가 급증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 동물 수는 513마리에서 477마리를 거쳐 332마리까지 줄어들었다. 입양된 동물 수도 75마리에서 351마리로 줄더니 30마리 아래로 급감했다.

휴가철마다 이처럼 갈 곳 없는 동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돼왔다.

유기견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생명 존중 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중한 입양과 올바른 양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무책임한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해 주인 잃은 견공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동물 유기가 큰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사회적으로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반면 주인에게 돌아간 반환 동물 수는 513마리에서 477마리를 거쳐 332마리까지 줄어들었다. 입양된 동물 수도 75마리에서 351마리로 줄더니 30마리 아래로 급감했다.

휴가철마다 이처럼 갈 곳 없는 동물이 급증하는 현상은 매년 연례행사처럼 반복돼왔다.

유기견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책임 의식과 생명 존중 사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중한 입양과 올바른 양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처럼 무책임한 반려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약해 주인 잃은 견공들이 양산된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도 동물 유기가 큰 범죄라는 점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 사회적으로 주의를 촉구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鼓 북 고 鼓瑟吹笙
瑟 큰거문고 슬
吹 불 취
笙 생활 생

▷ 뜻: 비파(瑟)를 치고 저를 부니 잔치하는 풍류(風流)임.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생명을 살리는 4분의 기적

심정지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가보면, 신고자 또는 목격자가 당황하여 그 어떠한 처지도 하지 않은 채, 소생음을 좌우하는 황급시간을 놓쳐 버리는 경우를 종종 접하게 된다.

119가 도착하기 전까지 시행되어야 할 목격자의 응급처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격자의 응급처치라 함은 심정지환자 발견 시 즉시 시행되어야 할 심폐소생술을 말하는데,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과 폐에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함으로써 인위적으로 혈액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심폐소생술지침서에 따르면 심정지가 발생하였을 시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실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소생률의 차이는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목격자의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입증하는 셈이다.

흔히들 심폐소생술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받았어도 금방 잊어버리기 쉬우며, 타인에게 실패 시도를 꺼려 하는게 대부분이다.

이러한 심폐소생술에 대한 시민

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화순소방서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 및 각 상황별 응급 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여 언제 어디서나 응급처치법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심정지가 발생하고 4:5분이 경과하면 뇌는 비가역적인 손상을 받게 되고,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중단되기 때문에 심각한 뇌 손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내 가족 또는 주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심정지 등의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평소에 심폐소생술에 대해 숙지하도록 해야겠다.

현재 심폐소생술 지침서는 가슴

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심정지환자(성인기준)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함께 5cm정도깊이와 분당 100-120회정도 속도의 깊고 빠른 가슴압박(30회)-기도유지(머리 젓히고 턱들기)-인공호흡(2회)을 권장하고 있다.

심정지환자 발견 시에는 119에 신속히 신고하여 환자상태 등을 알리고, 구급대가 도착 할 때까지 119상황실에서 안내하는 응급처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한다.

목격자의 신속한 신고와 신속한 심폐소생술, 그리고 119구급대원의 신속한 제세동기 사용과 효과적인 병원치료가 이어지는 생존사슬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손길임을 기억해야겠다.

류경진 / 화순소방서 능주119안전센터

湖南新聞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Advertisement for 'Korea's Best'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featuring a woman and a man, with text about mutual respect and social harmony.